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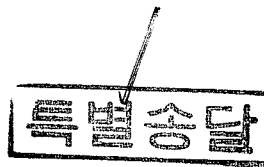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##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 - 741



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 - 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 - 240

서울중앙지방검찰청			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	/ 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
수신자 이수정	발신자 검사 이주형	(인)	
제 목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4. 18	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4년형제 6685호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	
피의자명	구동회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동회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동회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 04 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본규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안 내			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			
가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			
나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			
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			
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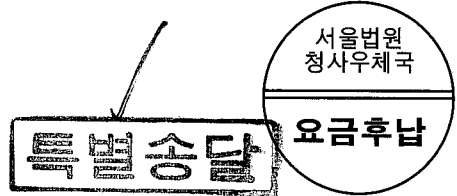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##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주 소: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 - 741



#### 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 - 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 - 240

<b>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</b>			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	/ 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
수신자 이수정	발신자 검사 이주형		(인)
제 목 고소 · 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	2006. 4. 18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4년형제 6685호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	
피의자명	구희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처 분 일 자	
처분결과			
피의자명	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처 분 일 자	
처분결과			
피의자명	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처 분 일 자	
처분결과			
<b>안 내</b>			
<p>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</p> <p>가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</p> <p>나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</p> <p>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</p> <p>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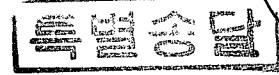
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

서울법원  
청사우체국

요금후납



## 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-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-240

<b>서울중앙지방검찰청</b>			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	/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
수신자 이수정	발신자 검사 이주형		(인) 2006. 4. 18
제 목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4년형제 6685호	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	
피의자명 구태희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 구태희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 구평희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 구혜원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안 내			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증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##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 소: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 - 741



### 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 - 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 - 240

<b>서울중앙지방검찰청</b>			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	/ 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
수신자 이수정	발신자 검사 이주형	(인)	
제 목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4. 18	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4년형제 6685호	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	
피의자명	구자용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자은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자홍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재희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<b>안 내</b>			
<p>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 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 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  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

서울법원  
청사우체국

서울중앙지방법  
유금후납

## 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-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-240

#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 / 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

수신자 이수정      발신자 검사 이수형 (인)  
제 목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      2006. 4. 18
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 2004년형제 6685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 
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피의자명	구자연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자명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자열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자업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
### 안 내

-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
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 
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증지처분된 경우  
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 
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  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

서울법원  
청사우체국

특별송달요금후납

## 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-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-240

우 137-74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 <b>서울중앙지방검찰청</b> / 전화 530-3114 / 전송 530-4240			
이수정	이주형		
수신자	발신자	검사	(인)
제 목	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4. 18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4년형제 6685호	
처분하였음으로 통지합니다.	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	
피의자명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	구분형		
피의자명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	구소연		
피의자명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	구소희		
피의자명	증권거래법위반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안 내			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주 소: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

전화번호: (02) 530-4564~5

137-741 - 741



특별송달

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-3 안국빌딩  
신관 3층참여연대

이수정

110-240

서울중앙지방검찰청			
우 137-741	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(서초동 1724)	/전화 530-3114	/전송 530-4240
수신자	이수정	발신자	검사 이주형 (인)
제 목	고소 · 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4. 18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4년형제 6685호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피의자명	구은희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은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은아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피의자명	구은정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증권거래법위반	처 분 일 자	2006.04.17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		
안 내			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증지처분 또는 참고인증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530-31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